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6년 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4% 증가(전월대비 0.8% 증가)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33.7%), 금속가공(12.5%), 석유정제(3.8%)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자부품(-12.2%), 기계장비(-8.4%), 통신·방송장비(-21.4%)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3% 증가(전월대비 3.4%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1.8%), 전문·과학·기술(-4.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6%), 보건·사회복지(5.2%)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함(전월대비 0.3% 증가).

◆ 2016년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7.5%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5.8%),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2.1%),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전월대비 1.8%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2.8%)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함(전월대비 6.8%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 및 도로·교량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85.3% 증가

◆ 2016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201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0.4% 상승)

- 201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46(2010년=100)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함(전월대비 0.3%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음식·숙박(2.5%), 교육(1.7%), 식료품·비주류음료(3.1%)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3.3)과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에서는 하락함.
 - 2016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07.71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함(전월대비 0.4%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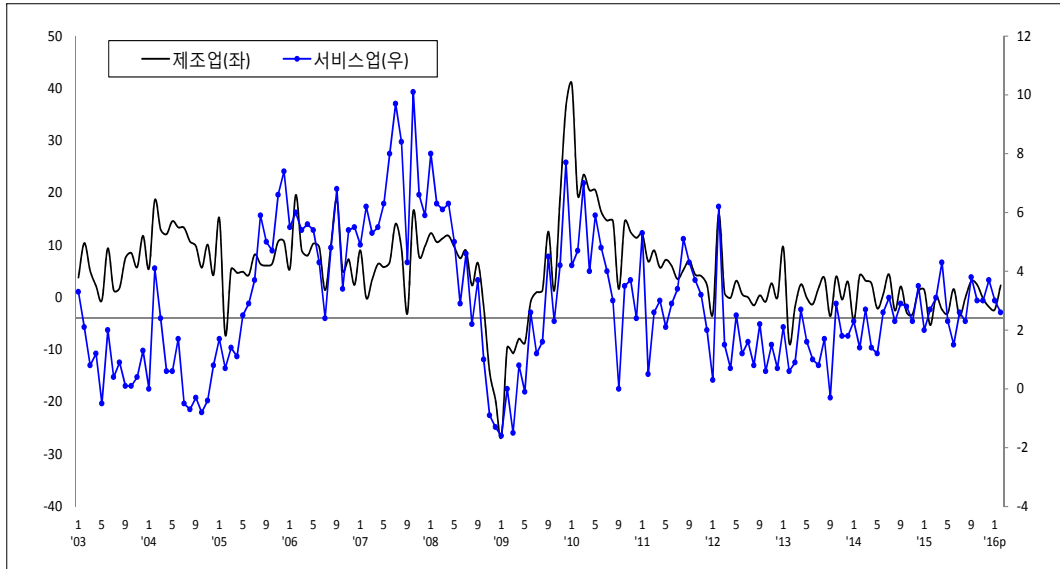
		2013					2014					2015p					2016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2월	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0.9	-1.5	-0.2	0.0	-0.6	-5.1	2.4(3.3)
	제조업 생산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1.0	-1.4	-0.4	0.1	-0.6	-5.3	2.3(3.4)
	출하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5.0	0.9(2.5)
	내수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4.9	1.2(1.0)
	수출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4.9	0.7(4.4)
	서비스업생산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2.7	2.6(0.3)
소비	소비재 판매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5.8	3.1(-1.8)
투자	설비투자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3.0	-7.5(-6.8)
물가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0.6	0.5	0.7	1.1	0.8	-0.8	0.4(-0.4)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6년 3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동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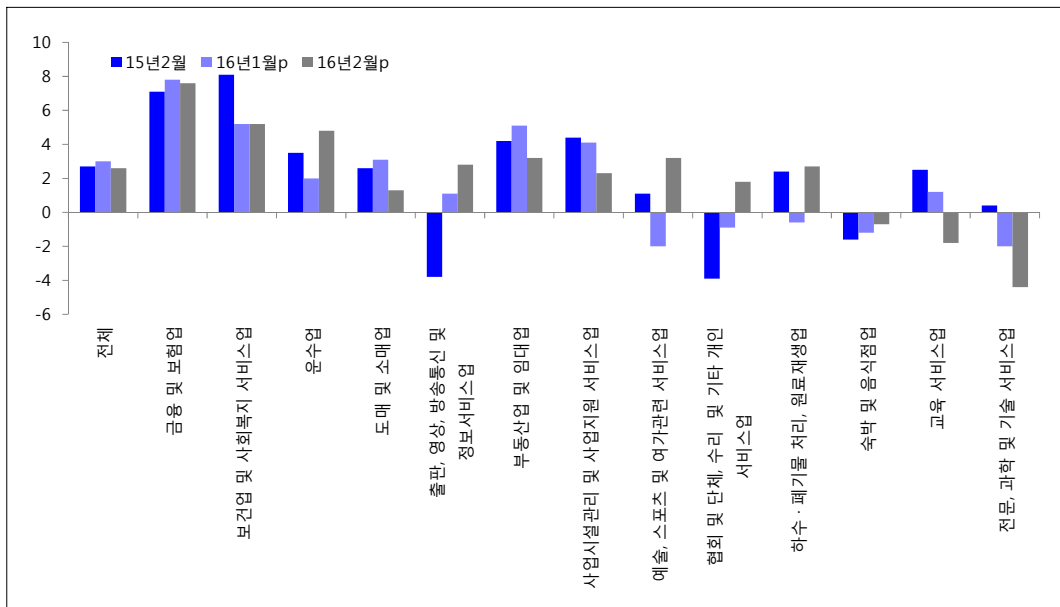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6년 1, 2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6. 3), 『2016년 2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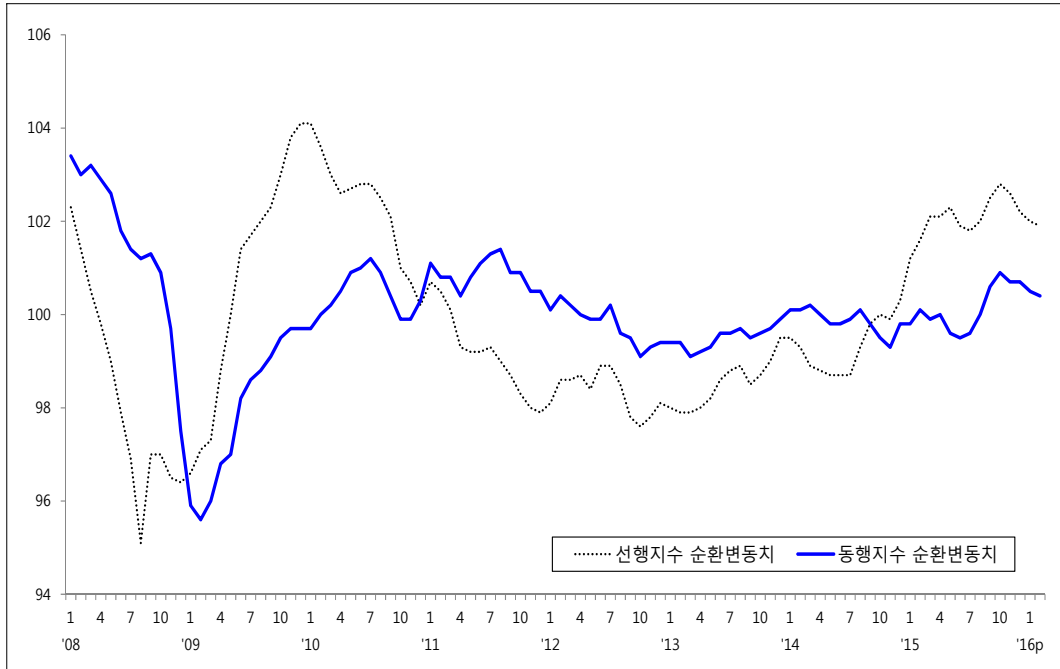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 취업자 증가 둔화, 실업률 상승

- 2016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6,70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1천 명(1.3%)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75천 명으로 158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1,233천 명으로 193천 명(1.8%) 증가
- 2016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3.0%)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50.9%)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
- 2016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5,5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7천 명(1.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07천 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80천 명 증가해 여성 중심으로 증가
 - 2015년 하반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그림 4 참조)
- 2016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6,622 (2.1)	26,356 (1.6)	26,577 (1.5)		27,140 (1.4)	27,166 (1.3)	26,989 (1.4)	26,708 (1.3)	26,734 (1.3)	26,955 (1.4)
참가율	62.4	61.5	62.0		63.2	63.0	62.5	61.7	61.8	62.2
취업자	25,767 (1.7)	25,267 (1.4)	25,501 (1.3)		26,098 (1.2)	26,237 (1.2)	26,143 (1.5)	25,554 (1.1)	25,418 (0.9)	25,800 (1.2)
고용률	60.4	59.0	59.5		60.7	60.9	60.5	59.1	58.7	59.6
실업자	854	1,089	1,076		1,042	929	845	1,153	1,317	1,155
실업률	3.2	4.1	4.0		3.8	3.4	3.1	4.3	4.9	4.3
비경제활동인구	16,066 (-0.6)	16,469 (0.4)	16,298 (0.7)		15,835 (1.0)	15,921 (1.0)	16,194 (0.8)	16,568 (0.6)	16,540 (0.7)	16,358 (0.4)

주 : 특별한 언급이 없는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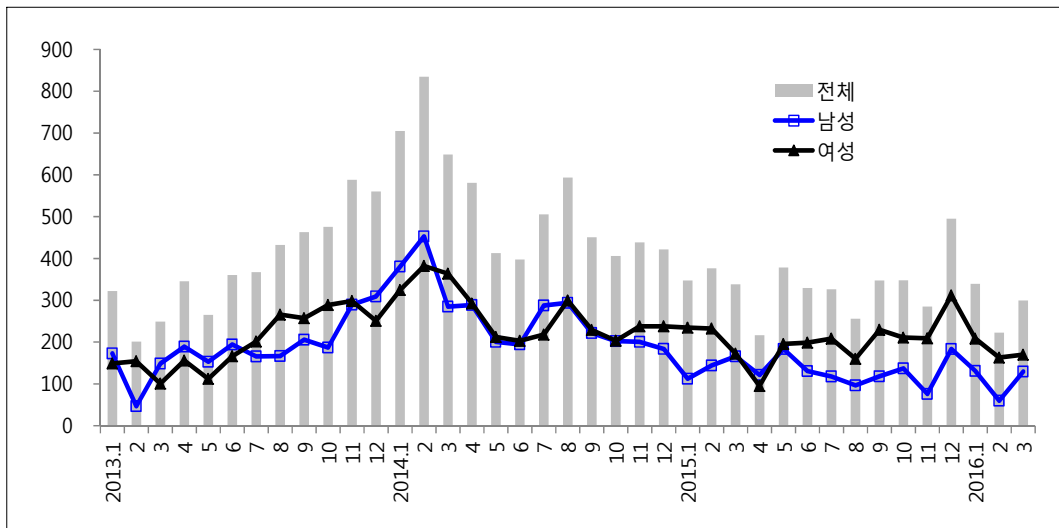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6. 4), 『2016년 3월 고용동향』.

- 남성의 고용률은 69.8%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7%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2%p 상승한 65.1%를 기록(그림 5 참조)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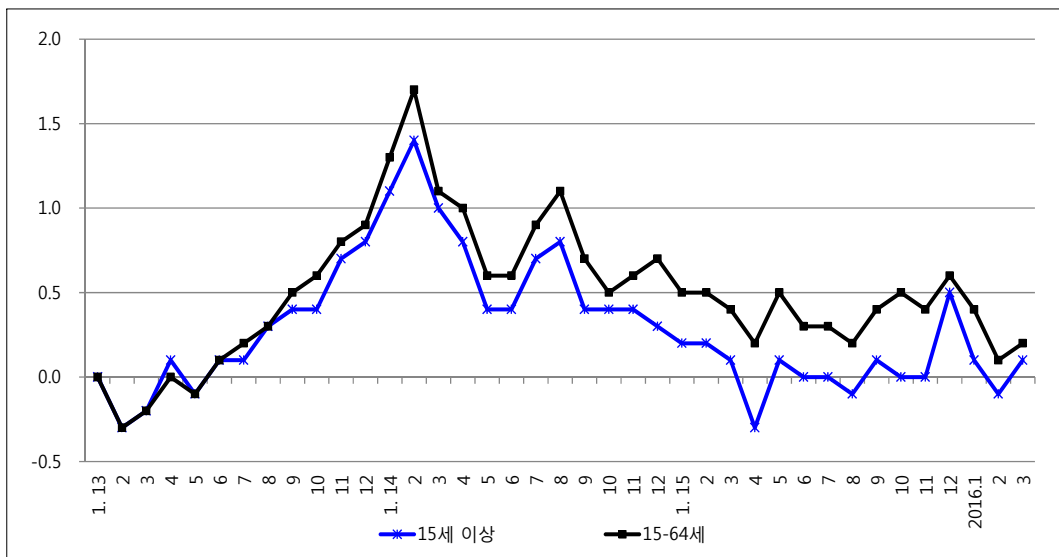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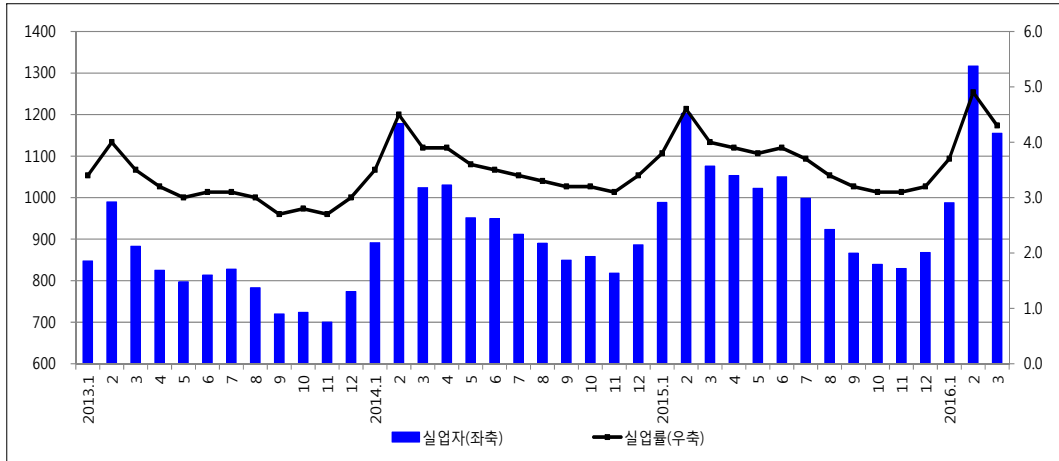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6]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 명, %)



자료 : 통계청, KOSIS.

- 2016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1,15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4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3%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 － 남성 실업자는 67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천 명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79천 명으로 13천 명 증가
- 2016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56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9천 명(0.6%) 증가
 -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73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1천 명 증가(1.6%)한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8천 명 증가한 10,837천 명을 기록
 -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11천 명으로 전년대비 97천 명(5.7%) 증가한 반면,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3,921천 명으로 107천 명(-2.7%) 감소

◆ 15~29세 청년층, 50대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증가 둔화

- 2016년 1/4분기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40천 명, 1.0%), 40~49세(6천 명, 0.1%), 50~59세(84천 명, 1.4%), 60세 이상(179천 명, 5.5%)에서 증가한 반면, 30~39세(-21천 명, -0.4%)에서 감소함.
 - － 교육정도별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대졸 이상(428천 명, 3.9%), 고졸(25천 명, 0.2%)에서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165천 명, -4.1%)에서 감소하였음.

〈표 3〉 연령별·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5,767 (1.7)	25,267 (1.4)	25,501 (1.3)	26,098 (1.2)	26,237 (1.2)	26,143 (1.5)	25,554 (1.1)	25,418 (0.9)	25,800 (1.2)
15~29세	3,855 (1.5)	3,872 (0.8)	3,799 (1.0)	3,933 (2.3)	3,991 (1.3)	3,955 (2.6)	3,911 (1.0)	3,916 (0.5)	3,875 (2.0)
30~39세	5,722 (-0.5)	5,671 (0.0)	5,659 (0.0)	5,665 (-1.0)	5,681 (-1.0)	5,686 (-0.6)	5,650 (-0.4)	5,636 (-0.8)	5,631 (-0.5)
40~49세	6,700 (0.1)	6,598 (-0.7)	6,602 (-1.0)	6,690 (-0.2)	6,679 (0.0)	6,707 (0.1)	6,604 (0.1)	6,597 (0.2)	6,609 (0.1)
50~59세	5,926 (3.3)	5,861 (3.1)	5,914 (2.7)	6,016 (2.3)	6,036 (2.5)	6,061 (2.3)	5,945 (1.4)	5,935 (1.3)	5,974 (1.0)
60세 이상	3,565 (6.0)	3,265 (6.3)	3,527 (6.3)	3,793 (4.1)	3,850 (4.7)	3,735 (4.8)	3,444 (5.5)	3,333 (5.0)	3,712 (5.2)
중졸 이하	4,472 (-3.5)	4,070 (-3.3)	4,249 (-3.1)	4,495 (-3.6)	4,461 (-3.3)	4,304 (-3.8)	3,905 (-4.1)	3,797 (-4.0)	4,088 (-3.8)
고졸	10,229 (3.0)	10,117 (2.1)	10,084 (2.5)	10,244 (1.8)	10,317 (0.9)	10,334 (1.0)	10,142 (0.2)	10,136 (0.0)	10,102 (0.2)
대졸 이상	11,067 (2.7)	11,080 (2.6)	11,167 (2.1)	11,360 (2.6)	11,458 (3.3)	11,505 (4.0)	11,508 (3.9)	11,485 (3.5)	11,611 (4.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6. 4), 『2016년 3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6년 1/4분기 중 중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18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27천 명(2.3%)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36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0천 명(-2.1%)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846천 명으로 505천 명(4.1%), 임시근로자는 4,932천 명으로 15천 명(0.3%)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408천 명으로 93천 명(-6.2%)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06천 명으로 64천 명(-4.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862천 명으로 31천 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1,001천 명으로 44천 명(-4.2%) 감소하였음.
- 2016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81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7천 명(3.4%)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20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5천 명(0.5%)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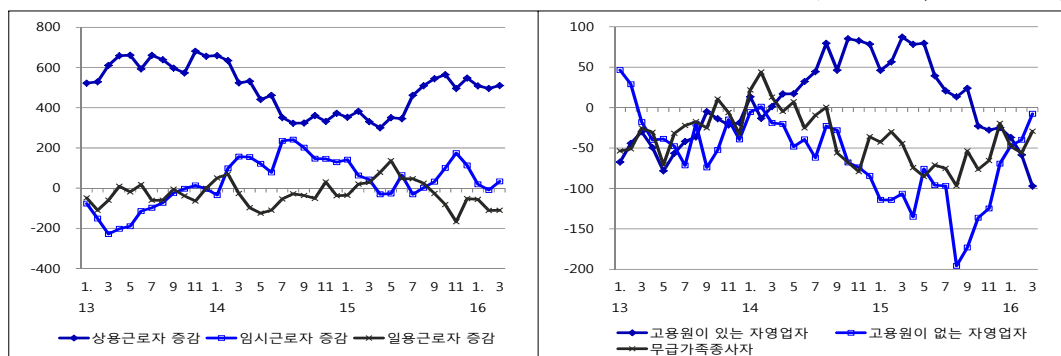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5,767 (1.7)	25,267 (1.4)	25,501 (1.3)	26,098 (1.2)	26,237 (1.2)	26,143 (1.5)	25,554 (1.1)	25,418 (0.9)	25,800 (1.2)
비임금근로자	6,799 (-0.8)	6,509 (-1.3)	6,702 (-0.9)	6,871 (-1.6)	6,836 (-3.0)	6,610 (-2.8)	6,369 (-2.1)	6,281 (-2.4)	6,568 (-2.0)
자영업자	5,625 (0.1)	5,463 (-0.9)	5,593 (-0.3)	5,675 (-0.6)	5,623 (-2.4)	5,490 (-2.4)	5,368 (-1.7)	5,308 (-1.8)	5,488 (-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74 (5.5)	1,570 (4.2)	1,617 (5.7)	1,619 (4.2)	1,587 (1.3)	1,549 (-1.6)	1,506 (-4.1)	1,491 (-3.8)	1,520 (-6.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51 (-1.8)	3,893 (-2.8)	3,976 (-2.6)	4,056 (-2.5)	4,037 (-3.7)	3,941 (-2.7)	3,862 (-0.8)	3,817 (-1.0)	3,968 (-0.2)
무급가족종사자	1,175 (-4.9)	1,046 (-3.6)	1,109 (-3.9)	1,195 (-6.1)	1,212 (-5.8)	1,121 (-4.6)	1,001 (-4.2)	973 (-5.4)	1,079 (-2.6)
임금근로자	18,968 (2.6)	18,758 (2.4)	18,799 (2.2)	19,227 (2.2)	19,401 (2.8)	19,533 (3.0)	19,185 (2.3)	19,137 (2.0)	19,233 (2.3)
상용근로자	12,280 (3.0)	12,341 (3.0)	12,364 (2.7)	12,507 (2.7)	12,686 (4.1)	12,817 (4.4)	12,846 (4.1)	12,849 (4.0)	12,874 (4.1)
임시근로자	5,076 (2.9)	4,918 (1.7)	4,968 (0.9)	5,066 (0.1)	5,155 (0.0)	5,205 (2.5)	4,932 (0.3)	4,878 (-0.2)	5,002 (0.7)
일용근로자	1,612 (-1.2)	1,500 (0.3)	1,466 (1.9)	1,654 (5.5)	1,560 (0.9)	1,511 (-6.3)	1,408 (-6.2)	1,410 (-7.3)	1,356 (-7.5)
36시간 미만	3,659 (7.8)	3,689 (2.7)	3,617 (2.0)	3,661 (7.8)	4,848 (-7.3)	3,795 (3.7)	3,816 (3.4)	3,794 (3.2)	3,797 (5.0)
36시간 이상	21,779 (0.7)	21,091 (1.3)	21,577 (1.4)	22,120 (0.1)	20,895 (3.5)	22,034 (1.2)	21,206 (0.5)	21,032 (0.0)	21,679 (0.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6. 4), 『2016년 3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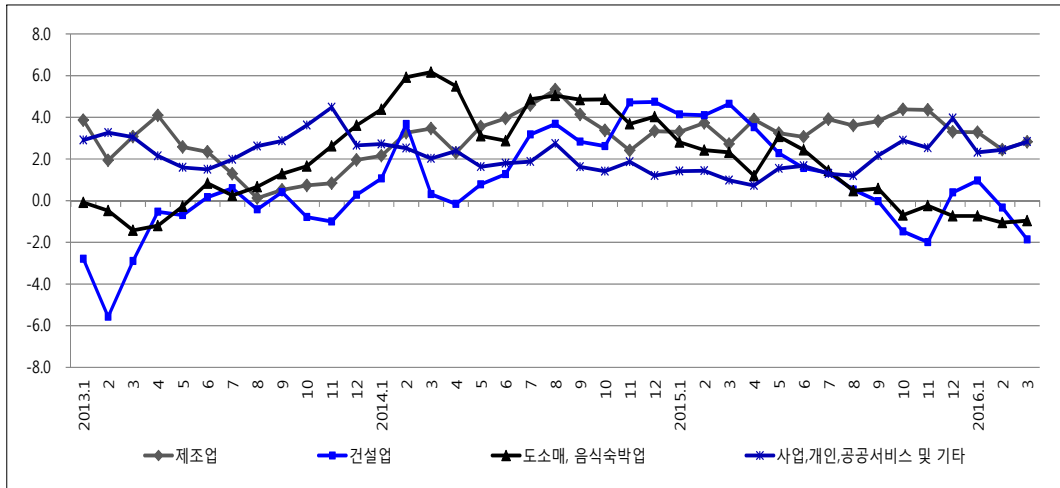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지속

○ 2016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26천 명, 2.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8천 명, 5.7%), 숙박 및 음식점업(74천 명, 3.5%),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행정(53천 명, 6.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128천 명, -3.3%), 농림어업(-54천 명, -4.9%), 여가관련 서비스업(-24천 명, -5.8%), 건설업(-8천 명, -0.5%)에서 감소함.

[그림 8]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표 5>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산업	25,767 (1.7)	25,267 (1.4)	25,501 (1.3)	26,098 (1.2)	26,237 (1.2)	26,143 (1.5)	25,554 (1.1)	25,418 (0.9)	25,800 (1.2)
농림어업	1,395 (-7.2)	1,092 (-7.4)	1,257 (-5.3)	1,505 (-7.7)	1,494 (-6.8)	1,289 (-7.6)	1,038 (-4.9)	975 (-5.9)	1,229 (-2.2)
제조업	4,374 (3.0)	4,418 (3.2)	4,400 (2.7)	4,466 (3.4)	4,511 (3.8)	4,550 (4.0)	4,544 (2.9)	4,541 (2.4)	4,525 (2.8)

〈표 5〉의 계속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기·가스·증기·수도	88 (0.0)	91 (13.8)	96 (24.7)	91 (13.1)	92 (11.2)	97 (10.2)	92 (1.1)	90 (-1.2)	95 (-1.0)
하수, 원료재생·복원	89 (12.7)	89 (11.0)	91 (9.6)	89 (-1.8)	89 (-1.0)	86 (-3.4)	91 (2.2)	91 (3.3)	90 (-1.1)
건설업	1,854 (4.0)	1,756 (4.3)	1,777 (4.6)	1,857 (2.4)	1,844 (0.6)	1,835 (-1.0)	1,748 (-0.5)	1,726 (-0.3)	1,744 (-1.9)
도매 및 소매업	3,848 (3.4)	3,848 (2.0)	3,818 (2.0)	3,775 (0.8)	3,763 (-0.9)	3,746 (-2.7)	3,720 (-3.3)	3,736 (-3.1)	3,676 (-3.7)
운수업	1,402 (-1.3)	1,402 (-1.2)	1,391 (-1.0)	1,410 (0.1)	1,415 (1.1)	1,411 (0.6)	1,432 (2.1)	1,425 (1.1)	1,433 (3.0)
숙박 및 음식점업	2,143 (5.7)	2,136 (3.5)	2,106 (2.9)	2,152 (4.8)	2,216 (4.0)	2,212 (3.2)	2,210 (3.5)	2,210 (2.6)	2,191 (4.0)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3 (3.6)	749 (6.5)	760 (7.8)	773 (5.5)	782 (10.6)	782 (9.7)	764 (2.0)	755 (0.7)	755 (-0.7)
금융 및 보험업	813 (-5.1)	788 (-7.7)	783 (-7.9)	789 (-6.8)	787 (-5.9)	792 (-2.6)	786 (-0.3)	782 (0.0)	776 (-0.9)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2 (2.4)	514 (1.4)	518 (3.6)	535 (7.9)	539 (4.5)	551 (7.6)	557 (8.4)	564 (7.2)	543 (4.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30 (0.8)	1,022 (-0.2)	1,013 (-0.7)	1,029 (1.2)	1,064 (3.5)	1,077 (4.6)	1,081 (5.8)	1,083 (4.9)	1,079 (6.5)
사업서비스	1,197 (2.5)	1,202 (3.2)	1,217 (4.9)	1,261 (5.8)	1,257 (7.6)	1,275 (6.5)	1,270 (5.7)	1,256 (5.6)	1,315 (8.1)
공공행정 등	923 (-5.1)	865 (-6.5)	931 (-5.8)	960 (-4.1)	954 (-2.7)	966 (4.7)	918 (6.1)	900 (7.4)	985 (5.8)
교육 서비스업	1,829 (3.6)	1,802 (2.4)	1,815 (1.3)	1,803 (-0.4)	1,816 (-0.6)	1,849 (1.1)	1,804 (0.1)	1,797 (0.5)	1,802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1,749 (9.6)	1,694 (8.0)	1,717 (5.0)	1,776 (3.9)	1,795 (2.9)	1,814 (3.7)	1,750 (3.3)	1,727 (2.6)	1,810 (5.4)
예술·스포츠·여가	407 (2.5)	412 (7.3)	419 (11.7)	438 (15.3)	431 (6.9)	417 (2.5)	388 (-5.8)	398 (-3.0)	375 (-10.5)
협회·단체·수리·기타	1,273 (-4.0)	1,267 (-3.3)	1,273 (-4.0)	1,277 (-3.2)	1,276 (-1.5)	1,287 (1.1)	1,257 (-0.8)	1,254 (-1.5)	1,272 (-0.1)
가구내 및 자가	103 (-34.4)	94 (-27.7)	88 (-28.5)	85 (-29.2)	77 (-30.6)	73 (-29.1)	74 (-21.3)	75 (-22.7)	71 (-19.3)
국제 및 외국기관	17 (88.9)	18 (63.6)	17 (41.7)	17 (30.8)	20 (25.0)	19 (11.8)	17 (-5.6)	16 (-9.1)	16 (-5.9)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6. 4), 『2016년 3월 고용동향』.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6년 1월 명목임금상승률 큰 폭 상승(전년동월대비 6.4% 상승)

- 201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6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 2016년 1월 상용·비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2%, 2.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증가(3,747천 원)는 정액급여증가율(4.2%)과 특별급여증가율(16.6%)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
 -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어 1월 중 명절상여금이 상당수 지급된 데 기인
 - 한편, 비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한 1,503천 원이며, 상승폭이 확대됨.

〈표 6〉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3	2014	2015	2016		
				1월	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349 (-8.8)	3,563 (6.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528 (-9.4)	3,747 (6.2)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753 (3.6)	2,869 (4.2)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02 (9.0)	209 (3.6)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74 (-45.4)	669 (16.6)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66 (0.1)	1,503 (2.5)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0 (1.3)	109.8 (0.7)	109.4 (0.8)	110.3 (0.8)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9.6	5.5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연평균은 1~12월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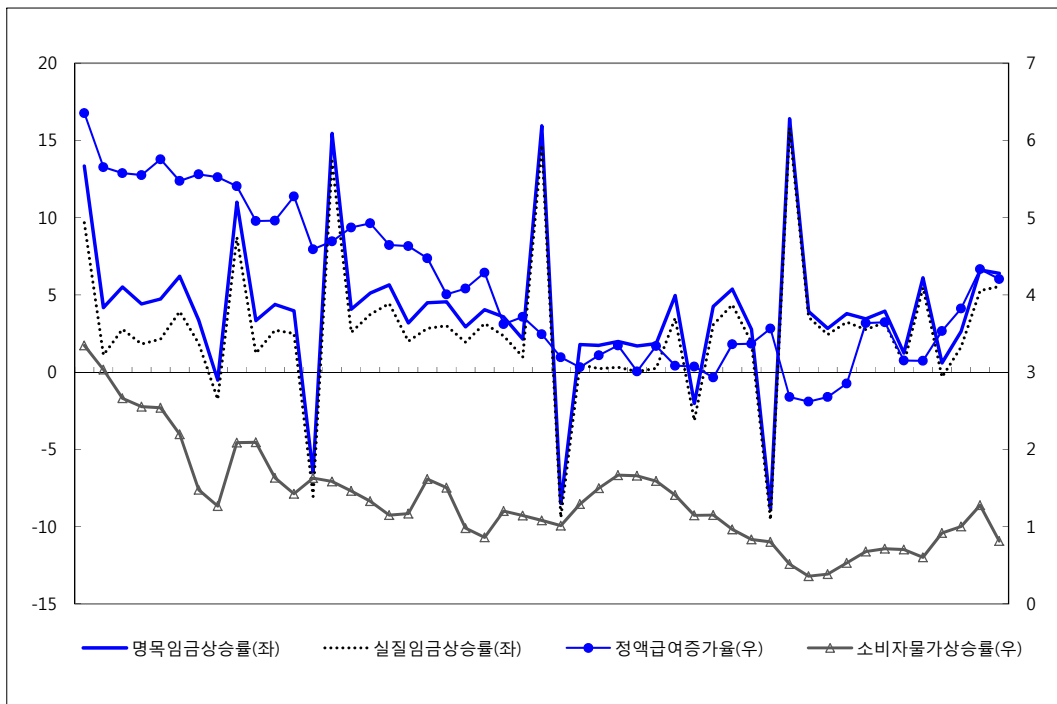
- 2016년 1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5.5% 상승
 - 201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5.5%임.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인 반면 명목임금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 2016년 3월 협약임금 인상률 4.8%

- 2016년 3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8%로 2015년 3월 인상률(4.5%)보다 0.3%p 상승함.
 - 2016년 3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0.2%로 전년동월(1.7%)보다 더딤.

[그림 9]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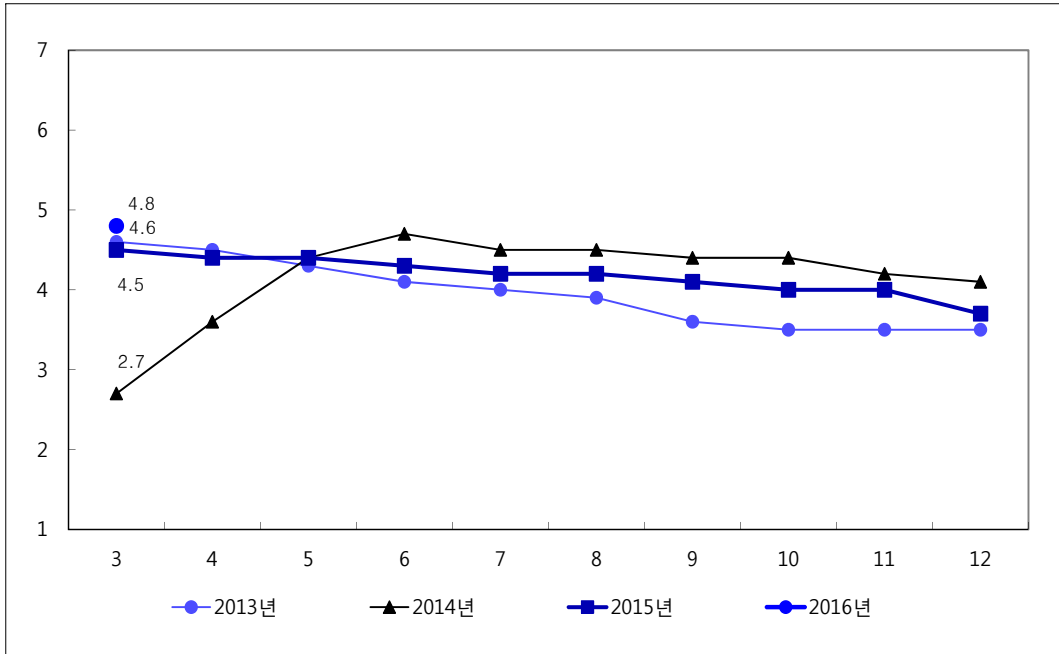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을 추이

(단위: %, 월)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6년 1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4%)임.
 - 이외에도 광업(12.7%),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0.5%)은 10%를 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한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제조업(4.7%), 금융 및 보험업(4.9%), 음식 및 숙박업(5.0%)은 평균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5% 이하를 기록함.
 - 2016년 1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876천 원)이며,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 및 숙박업(1,862천 원)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5	2016	
			1월	1월
전 산업	3,190 (2.5)	3,300 (3.5)	3,349 (-8.8)	3,563 (6.4)
광업	3,480 (-2.1)	3,676 (5.6)	3,497 (-11.5)	3,940 (12.7)
제조업	3,506 (4.0)	3,617 (3.2)	3,963 (-13.6)	4,151 (4.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54 (0.2)	5,856 (5.4)	4,877 (-3.0)	5,387 (10.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812 (2.5)	2,945 (4.8)	2,876 (-5.4)	3,071 (6.8)
건설업	2,497 (3.4)	2,591 (3.8)	2,570 (-5.6)	2,740 (6.6)
도매 및 소매업	3,206 (1.2)	3,292 (2.7)	3,159 (-5.3)	3,402 (7.7)
운수업	2,805 (2.7)	2,952 (5.3)	2,669 (-3.4)	2,894 (8.4)
숙박 및 음식점업	1,785 (0.7)	1,824 (2.2)	1,773 (-3.0)	1,862 (5.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05 (-0.8)	4,012 (2.7)	3,847 (-7.1)	4,186 (8.8)
금융 및 보험업	5,234 (3.5)	5,488 (4.9)	5,603 (-2.9)	5,876 (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3 (2.3)	2,478 (6.7)	2,400 (0.8)	2,535 (5.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19 (4.2)	4,561 (3.2)	4,130 (-12.4)	4,723 (14.4)
사업서비스업	1,924 (2.2)	2,002 (4.1)	1,940 (-1.5)	2,068 (6.6)
교육서비스업	3,375 (3.5)	3,483 (3.2)	3,867 (-8.4)	4,118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00 (1.4)	2,772 (2.7)	2,707 (-3.3)	2,819 (4.1)
여가관련 서비스업	2,398 (3.1)	2,512 (4.7)	2,345 (-9.1)	2,572 (9.7)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49 (1.0)	2,326 (3.4)	2,177 (-5.2)	2,431 (11.7)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연평균은 1~12월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6.1%임.
 - 2016년 1월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높았던 것은 상용직 근로자의 특별급여증가율이 컸던 데 기인함(중소규모 사업체 특별급여증가율 33.0%, 대규모 사업체 특별급여증가율 1.9%).
- 2016년 1월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7.5% 상승한 1,664천 원인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한 1,490천 원으로 나타남.

〈표 8〉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5	2016
				1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 체	3,190 (2.5)	3,300 (3.5)	3,349 (-8.8)
	상용임금총액	3,378 (2.4)	3,490 (3.3)	3,528 (-9.4)
	정액급여	2,660 (3.2)	2,749 (3.3)	2,753 (3.6)
	초과급여	201 (9.3)	216 (7.4)	202 (9.0)
	특별급여	516 (-3.7)	525 (1.6)	574 (-45.4)
	비상용임금총액	1,387 (0.7)	1,424 (2.7)	1,466 (0.1)
5~299인	소 계	2,836 (2.6)	2,938 (3.6)	2,862 (-5.2)
	상용임금총액	3,008 (2.4)	3,110 (3.4)	3,016 (-5.9)
	정액급여	2,504 (2.9)	2,577 (2.9)	2,588 (3.5)
	초과급여	172 (7.5)	184 (6.6)	171 (8.2)
	특별급여	332 (-3.6)	349 (5.3)	257 (-52.9)
	비상용임금총액	1,390 (-0.1)	1,434 (3.2)	1,460 (-0.3)
300인 이상	소 계	4,678 (5.2)	4,849 (3.7)	5,520 (-11.9)
	상용임금총액	4,827 (5.3)	5,017 (3.9)	5,654 (-11.7)
	정액급여	3,272 (5.8)	3,438 (5.1)	3,437 (6.5)
	초과급여	316 (16.9)	349 (10.4)	329 (16.2)
	특별급여	1,239 (1.5)	1,230 (-0.7)	1,888 (-34.7)
	비상용임금총액	1,354 (11.1)	1,329 (-1.8)	1,54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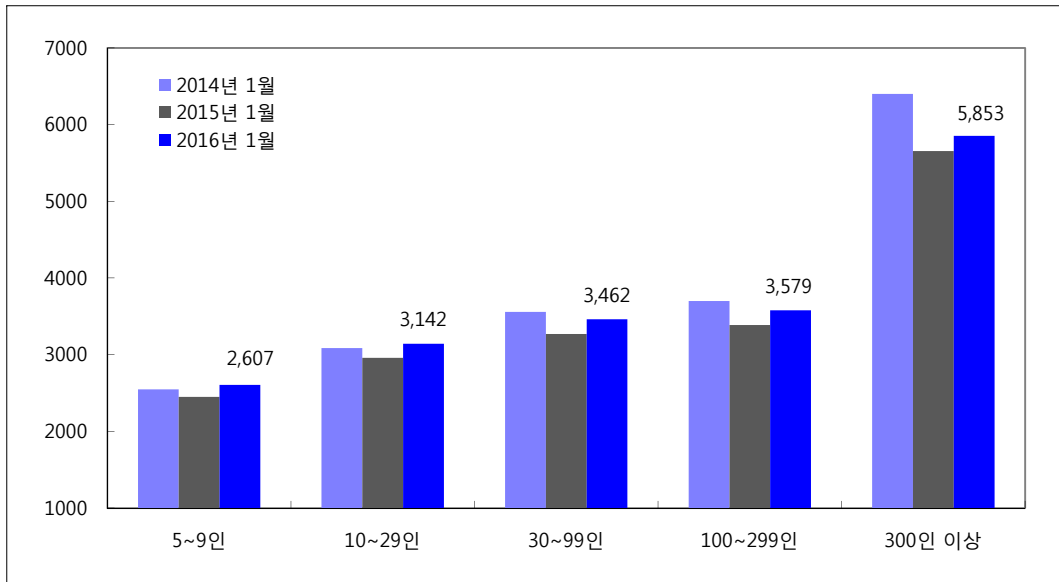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연평균은 1~12월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함.
 - 중소기업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198천 원)은 전년대비 6.0% 상승했으며, 이는 큰 폭의 특별급여 증가에 기인함.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5,853천 원)은 전년대비 3.5% 상승했으며, 초과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의 흐름으로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그림 11]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주: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한 168.8시간(월력상 근로일수 1일 감소)

○ 2016년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8.8시간(6.2시간↓)임.

<표 9>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4	2015	2016	
			1월	1월
전체 근로시간	171.4(-0.7)	172.6(0.7)	175.0(3.6)	168.8(-3.5)
상용 총근로시간	177.1(-0.6)	178.4(0.7)	180.0(3.8)	173.2(-3.8)
상용 소정일근로시간	164.1(-0.9)	165.6(0.9)	167.4(4.2)	161.2(-3.7)
상용 초과근로시간	12.9(3.2)	12.8(-0.8)	12.6(-0.8)	12.1(-4.0)
비상용근로시간	117(-4.5)	114.6(-2.1)	123.0(-1.9)	118.5(-3.7)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연평균은 1~12월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73.2시간), 소정실근로시간(161.2시간), 초과근로시간(12.1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8%, 3.7%, 4.0%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18.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2016년 1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0%)이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7%), 건설업(-4.6%), 숙박 및 음식점업(-4.5%) 등으로 나타남.
 - 2016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0.4시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81.0시간)으로 나타남.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산업은 건설업(143.0시간)임.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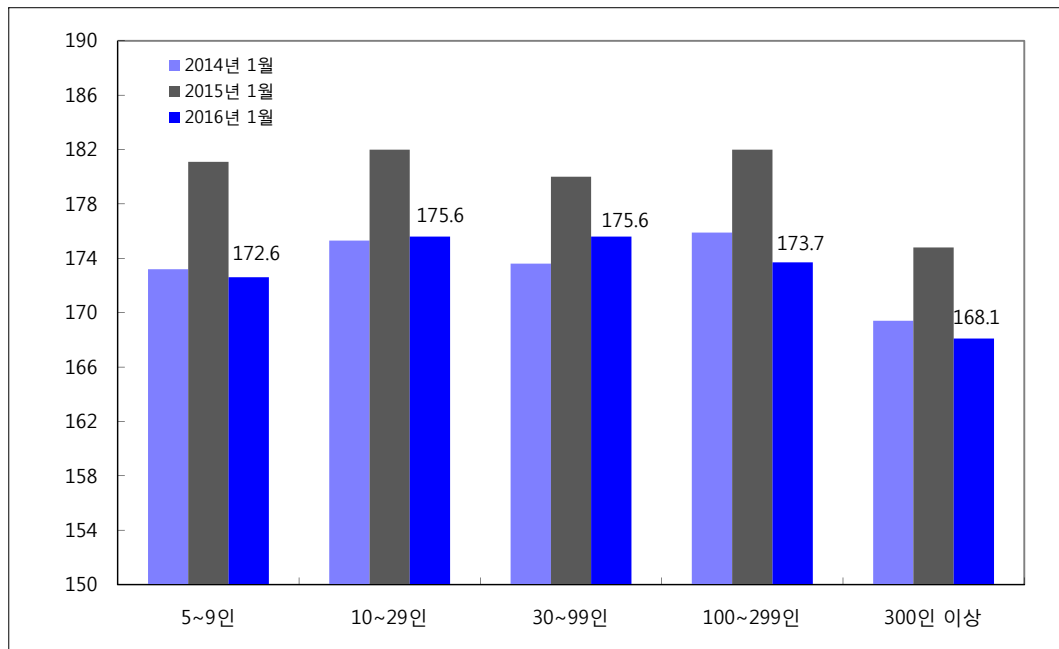
	2014	2015	2016	
			1월	12월
전 산업	171.4(-0.7)	172.6(0.7)	175.0(3.6)	168.8(-3.5)
광업	179.4(-0.7)	179.2(-0.1)	183.2(6.1)	176.0(-3.9)
제조업	185.4(0.2)	186.3(0.5)	188.6(3.6)	181.0(-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5(-1.7)	170.8(0.2)	175.0(2.6)	166.8(-4.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2.3)	177.8(0.0)	178.8(1.0)	174.3(-2.5)
건설업	148.5(-2.8)	147.4(-0.7)	149.9(-0.1)	143.0(-4.6)
도매 및 소매업	172.3(-0.6)	172.9(0.3)	175.8(4.1)	168.5(-4.2)
운수업	173.1(-2.6)	173.9(0.5)	175.8(2.4)	170.9(-2.8)
숙박 및 음식점업	175.2(-1.2)	175.3(0.1)	180.3(1.3)	172.1(-4.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1.9(-0.7)	164.3(1.5)	166.5(4.7)	160.2(-3.8)
금융 및 보험업	163.4(0.4)	164.3(0.6)	167.3(4.0)	158.9(-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1(-0.7)	192.8(1.4)	194.7(2.3)	190.4(-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3(-0.4)	164.9(1.0)	166.1(5.0)	160.4(-3.4)
사업서비스업	171.9(-0.2)	173.2(0.8)	176.8(5.0)	171.5(-3.0)
교육서비스업	152(0.9)	151.5(-0.3)	154.5(2.5)	147.9(-4.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9.6(-1.4)	171.5(1.1)	173.1(4.2)	166.4(-3.9)
여가관련서비스업	158.9(0.6)	160.6(1.1)	159.1(0.9)	156.2(-1.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9(-2.7)	163.7(0.5)	166.5(2.8)	162.1(-2.6)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연평균은 1~12월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1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함.
 - 중소기업(5~299인)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9.3시간(-3.5%)이며,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에서의 총근로시간은 166.6시간(-3.7%)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업체 세부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164.0시간(-4.7%), 10~29인 사업체는 167.8시간(-3.7%), 30~99인 사업체는 173.1시간(-1.9%), 100~299인 사업체는 172.9시간(-4.3%)으로 나타남.

[그림 12]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월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3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19건
 - 지난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142건)보다 23건 낮은 수치임.
- 지난 3월 조정성립률 66.7%
 - 지난 3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9.1%에 비해 7.6% 높아진 수치임.

〈표 11〉 2015년, 2016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6.3	119	105	60	17	43	30	4	26	4	11	14	66.7
2015.3	142	114	55	26	29	38	6	32	4	17	28	59.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02건
 - 지난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27건)보다 25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9.2%(29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0.8%(45건)를 차지함.

〈표 12〉 2015년, 2016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6.3	102	74	29	0	10	8	27	0	28
2015.3	127	74	35	0	12	7	20	0	5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제·개정)’ 시행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간제근

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11.7월 제정),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①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동종·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함.
- ②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2011.7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정 이전의 주요내용으로는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규정 등이 있음.
 - 개정 내용으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함.
-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활동과 근로감독 등을 연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장(12천개소) 근로감독 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방침임.
 -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그간 7만 4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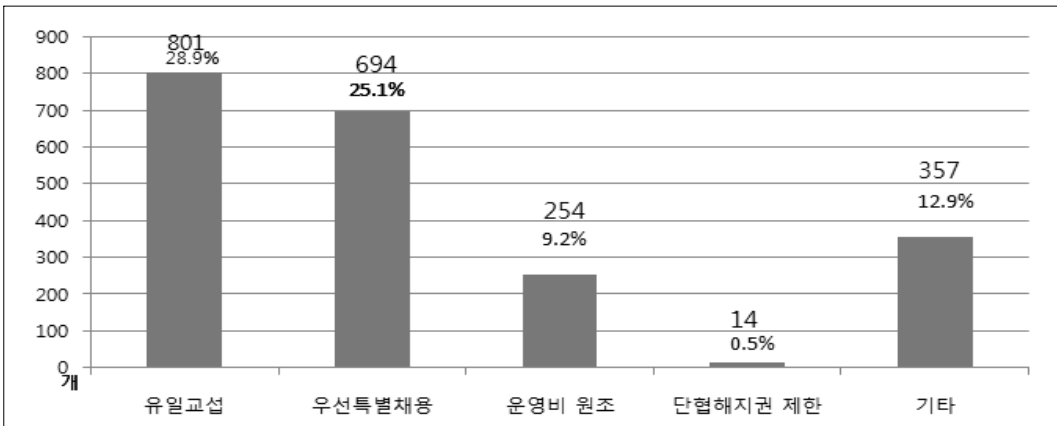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힘.

－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2,769개의 조사대상 가운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남.

－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13〕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별 현황



주 : 하나의 단협에 다수의 위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위반 내용별 합계(2,120개)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협 수(1,165개) 간 차이 발생.

자료 :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

－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3〉 위법한 단체협약 상급단체 및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계	상급단체별			규모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300 미만	300~999	1,000 이상
조사대상(a)	2,769	1,621	750	398	1,722	705	342
위반단협(b)	1,165	658	355	152	699	331	135
비율(b/a)	42.1	40.6	47.3	38.2	40.6	47.0	39.5

자료 :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

- 또한,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인사·경영권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상급단체 및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계	상급단체별			규모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300 미만	300~999	1,000 이상	
우선·특별채용규정 단체협약 현황	조사대상(a)	2,769	1,621	750	398	1,722	705	342
	위반단협(b)	1,165	658	355	152	699	331	135
	비율(b/a)	42.1	40.6	47.3	38.2	40.6	47.0	39.5
불합리한 인사·경 영권 제한 단체협약 현황	조사대상(a)	2,769	1,621	750	398	1,722	705	342
	위반단협(b)	368	172	141	55	197	111	60
	비율(b/a)	13.3	10.6	18.8	13.8	11.4	15.7	17.5

자료 :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계획』.

-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임.
-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위법한 단협으로 간주하는 고용세습 조항 중에는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됨.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단협 실태조사 계획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학계 의견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고, 취업자 비율이 높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음.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0월 업무상재해자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 단협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위법한 단협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기권 장관은 “단협 규정이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며 “단협상 청년채용을 방해하는 규정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120개 조항 중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801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694개로 70.5%나 되나 이들 조항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논란임.

-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단체협약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사문화됐거나 실효성 없는 조항을 억지로 부풀려 노조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함.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고용세습 운운한 특별채용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며 노동부 실태조사는 실효성 없는 조항을 부풀려 노동계를 흠집내기 위함이라며 비난함.
- 민주노총도 노동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현장 노사관계에 개입할 빌미를 만들려고 불법적 단체협약이 많은 것처럼 포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근거로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둔 기업 89곳을 살펴보니 최근 3년간 이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 건뿐”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를 제시함.

◆ 정부, 노동개혁법 19대 국회 처리 요구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 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함.
 - 같은 날,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동개혁법·서비스발전법이 19대 국회 잔여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다”며 “입법이 이뤄지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함.
 -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법안을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힘.
 - 새누리당은 노동계가 민감해하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처리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처리하도록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만큼 나머지 4대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법안으로 노동개혁 4대 법안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임.
- 반면,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저지해온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까지 쥐게 되면서 노동개혁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고용안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노동개혁 법안이 당초 노동계와의 합의 정신을 외면한 악법으로 변질된 만큼 정부 여당이 관련법을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보완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임.

-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고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 사실상 노사정 위의 결론에 따르자는 입장임.

○ 정부의 노동개혁법안 처리 발표와 관련해 양대 노총은 “아직도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노동개혁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4·13 총선 참패에도 노동자·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노동계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국민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인다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개악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함.

◆ 한국경영자총협회, ‘양대 지침 가이드북’ 발표

○ 한국경총이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나 일반해고제를 시행하면서 희망퇴직·정리해고 같은 기존 해고를 병행하면 효과가 높다는 지침을 회원기업에 전달했으며,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노조 합의가 없더라도 개정을 강행하라고 권함.

- 경총은 대응지침에서 “공정인사 지침의 목적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해고·퇴직 조치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해고·경영상해고·희망퇴직 등 해고·퇴직 관련 조치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 또한, 경총은 “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 단협에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한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을 규정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 동의가 절차적 요건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함.
- 게다가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라고 제시했음.
- 경총 관계자는 “올해 1월 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기업들이 반영해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음.

◆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

- 정부가 이른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연내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을 추진하면서, 양대 공공부문 노조들이 지난해 해체된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하기로 함.
 - 지난달 18일 공공부문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소속 5개 공공부문 노조·연맹 대표자들은 지난 4월 16일에 만나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를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획재정부가 정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시점인 4월까지 각 단위조직들을 추스린 뒤 5월 초 공대위 복원을 선포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공부문 노동계는 정부에서 추진한 1·2차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대위를 구성했지만 정부가 경영평가를 활용해 번번이 중도 이탈하는 노조가 생기고 공대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기재부는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점검했고,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4월 중 47개 선도기관에 도입하고 30개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세움.
 - 하지만, 공공부문 노조·연맹 대표자들은 최대한 설득하되, 중도이탈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투쟁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총선으로 정치적 구도가 바뀌고 현장 정서도 반대 분위기인 만큼 최대한 소속 노조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성과연봉제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공대위 차원의 연대투쟁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 특성상 개별적으로 지침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함.
 - 기획재정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11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달 19일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노조 대표자 간담회를 가짐.
 - 간담회에서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는 기능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 지침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과반수노조 지위를 문체 삼아 최근 개별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우려함.
 - 전만원 한국정보화진흥원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어 홀로 버티기가 벅차다”며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싸워줘야 한다”고 강조함.
 - 4개 노조·연맹 대표자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기관들이 이달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 버티 줘야 5월 초 구성될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함.

◆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잠정합의

-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사가 2개조 각각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잠정합의함.
 - 기아자동차 노사는 18일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본교섭을 열고 평일산업근무를 없애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함.
 - 현재 기아차는 1조가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2조 근무가 다음 날 새벽 1시40분에 끝나는 2조2교대제를 시행 중이며, 노사는 앞으로 심야노동을 줄이기 위해 1·2조 실근로시간을 각각 8시간과 7시간50분으로 변경하는 근무형태 변경에 합의함.
 - 노사는 전환배치 없이 전 공장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1.0대(2.2%) 올리기로 했고, 임금·단체협상 내부의견 수렴과 지부장 선거 등 노조활동에 보장된 시간 가운데 일부를 줄여 매년 평균 5시간의 근무시간을 확보하기로 함.
 -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1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을 추진하기로 함.
 - 일부에서는 완성차업계의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지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의 근무형태 변화도 예상된다고 밝힘.

〈표 15〉 기아자동차 노사 주간연속 2교대제 잠정합의안

비고	현행 (8+9)		변경 (8+8)	
	1조	2조	1조	2조
근무시간	07:00 ~ 15:40	15:40 ~ 01:40	07:00 ~ 16:00	16:00 ~ 00:40
실근로시간	7시간 40분	8시간 50분	8시간 (20분 증가분 연장근로 수당 150% 적용)	7시간 50분
휴게시간	60분	70분 (잔업 휴게시간 10분 포함)	60분	50분 (휴게시간 10분 축소분 연장근로수당 150% 적용)

자료 : 매일노동뉴스(4월 19일자).

◆ 서울중앙지법, 유성기업 '기업노조설립' 무효

- 지난달 14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시함.
 - 기업노조인 유성기업노조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갈등

- 이 있던 2011년 7월15일 설립되었고 조합원을 늘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음.
- 그러나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에 따라 기업노조가 설립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회사가 관리직을 투입해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사실도 확인됨.
- 재판부는 이날 “기업노조는 회사 주도하에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설립·운영에서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진 지회 조합원들의 해고·징계와 임금삭감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기업노조가 사라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회복한 유성기업지회는 조만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교섭

- 금속노조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17개 노조들이 올해 그룹을 상대로 공동교섭 요구를 하고 나섬.
 - 2006년부터 산별중앙교섭을 벌여온 금속노조가 올해는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과 중앙교섭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임.
 - 금속노조는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공동교섭 진행을 현대차그룹에 제안한다”고 밝힘.
 -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안에는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자동차·철강·철도산업 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의 주식배당금 중 최소 20% 이상 출연, 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납품단가 결정 시 물가 및 원가 연동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이 포함돼 있음.
-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해소라는 산별 정신을 살리지 못할 경우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박유기 현대차지부장은 “그룹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임금 인상, 복지 사항은 빼고 원·하청, 재벌 문제 등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밝힘.
 - 광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단순히 그룹사 내부 공동 의제 대응을 넘어 원·하청 간 시급이라도 비슷하게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짜고 이를 비계열사 부품업체, 다른 업종까지 확산시키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함.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조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

직, 부품업체 노동자와 나누는 등의 연대임금 전략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밝힘.

- 그리고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을 교섭테이블에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임.
 - － 현대차그룹은 “공동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데다 계열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공동교섭이라는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힘. **KLI**

(정재우, 동향분석실 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5월호